

바로 선 세월호…진실 바로세우기 본격 시작

외부 충돌 흔적 발견 안돼…선조위 모든 가능성 놓고 조사
선체 왼쪽 객실·주기관실 등 5주동안 미수습자 정밀 수색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 된 지 405일째 만에 마지막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다.

4년 만에 세월호가 똑바로 세워지면서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진입이 어려웠던 구간의 미수습자 수색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선제조사위원회(선조위)는 10일 “이날 낮 12시10분 세월호 선체를 94.5도까지 바로 세워 선체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립한 세월호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외부 충돌의 흔적이 육안으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선조위는 모든 침몰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날 세월호 뒤편 부두에 자리 잡은 해상크레인에 와이어를 앞·뒤 각각 64개씩 걸어 선체를 뒤편에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미수습자 수습을 맡은 해양수산부는 현대삼호중공업이 일정대로 직립을 위해 선체에 설치했던 장치를 제거하면 다음달 중순 안전 보장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후 오는 7월까지 진입을 하지 못한 구간의 정리를 완료하고, 선체 왼쪽 객실과 주기관실, 보조기관실, 측계실, 선미원추진실 등에 진입해 5주간 마지막 미수습자 수색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선조위는 해수부가 미수습자를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을 선조위 업무가 끝나는 8월 6일까지로 예상하고 있다.

세월호 직립 모습을 지켜본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은 선체 내 정밀수색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세월호 미수습자인 단원고 양승진 교사의 아내 유백형씨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5명과 나중에 수습된 4명도 온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왔으면 한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지난 4년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가 직립에 성공했다”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이 꼭 가족 품에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선제조사위원회는 선체 직립에 성공한 만큼 그동안 진입이 어려운 구간

에 대한 조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창준 세월호 선제조사위원회 위원장은 “5명의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과제이며 아직까지 진입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겠다”면서 “현재 30% 정도 진행된 조사결과를 선조위 종로시점인 8월 초까지 보완해 마지막 브리핑과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이 포함된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육안으로는 세월호 정면과 측면에서 외부 충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확인되지 않은 물체가 좌현 뒤쪽 스텔라이저(균형장치)를 밀고 지나갔다는 외부충돌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수뢰’ 한전 간부 2명 추가 구속

광주지검 수사 확대

한국전력공사(한전) 간부들의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전간부 2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최근 한전본사 간부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3명의 한전직원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2015~2016년 공사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전 전북지역본부 중간 간부급 직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한전본사 임원급 간부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4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내 한전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간부 2명을 긴급체포한 뒤 추가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한전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전기업자들도 구속했으며, 이번 뇌물사건이 한전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소화기 사용 이렇게

10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빛고를 안전체력 한마당’에 참여한 유치원생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은행 채용 비리’ 2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

‘K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점수조작에 가담한 은행 인사담당 임원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10일 “2015~2016년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 합격·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업무방해)로 2016년 당시 K은행 인사부행장 A씨와 인사부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15년 당시 인사부행장 C씨와 인사부장 D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 1차 면접결과를 조작해 불합격자 9명을 합

격자로, 합격자 12명을 불합격자로 바꾼 혐의다. 이 같은 조작을 통해 총 5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또 2차 면접 결과도 조작, 1명을 추가 합격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일부 면접위원에게 점수조작을 부탁하는 수법으로 합격 여부를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점수를 바꾼 면접위원들도 사실상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C씨와 D씨는 2015년 신입행원 채용 1차 면접에서 불합격자 E씨를 합격자와 뒤바꾼 혐의다. 당시 인사부행장이었던 C씨는 자신의 딸인 E씨의 면접에 직접 참여해 최고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B, C, D씨는 현재 검찰에서 “성별, 출신학교별로 채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일부 바꾼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공고 이후에 임의로 성별, 출신학교별 채용인원을 조정하는 것 자체도 범죄행위인데, 이들은 이마저도 기준 없이 차순위자가 아닌 성적이 하위권에 있는 응시자를 합격자로 만들었다. 당시 은행장에게 이 같은 행위를 보고 조작 하지 않았다”면서 “합격자 조작과정에서 정략부분에 대한 수사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집단폭행’ 광주지검 강력부 배당 수사 속도

검찰이 광주 수원지구 집단 폭행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국민적 관심 등을 감안해 강력부장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사건 당시 CCTV 등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산경찰로부터 광주 수원지구 집단 폭행 사건이 송치됨에 따라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현재 대검 과학수사부에 사건 현장 CCTV와 목격자의 스마트폰 영상

등 총 4건의 영상을 보내 화면·음성분석 등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광주 광산경찰은 지난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5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원동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씨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법원 “동급생에 욕설 학생 사회봉사 처분은 지나쳐”

동급생에게 욕설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이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이모(18)군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사회봉사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6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동급생 정모군에게 “(너가) 매일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게 짜증 나, 왕따 당하고 싫냐. 조용히 다녀라”는 등의 말과 함께 욕설했다.

피해 학생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이군에게는 사회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 3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사회봉사 조치는 그 행위에 비해 원고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려면 심각·지속·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에 대한 판정점수가 7~9점이어야 하는데 발생 경위, 원고와 피해 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보면 판정점수가 7점 이상에 해당한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택배원…산재보험 적용 대상”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공모씨는 2013년 배달 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됐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와 요양비 등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공단은 배달대행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한다고 통보했다. 업체 대표인 박씨는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보험급여를 잘 못 지급한 것”이라며 징수통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음식 배달원에 해당한다며 산재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보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여승무원 물가 촬영 ‘못된 대학생’ 벌금 500만원

○…법원이 국내선 여객기와 공항 등에서 스튜어디스와 여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대학생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10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 김모(25)씨가 여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